

2002 지방세법령 개정 해설

구 본 품

행정자치부 세제담당관실

I. 머리말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2002년 지방세법령 개정은 현행 세제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면서 지방세구제제도에 준수법적 절차를 도입하고, 재산할 사업소세의 납부기간을 연장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편익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전통 소싸움을 레저세 과세대상에 추가하는 한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자동차세 납세여부 확인 등 경제·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른 세제개선 및 법인·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시한 연장 등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다.

2002년도 지방세법개정안은 2002.8.3.부터 2002.9.3.까지 관계부처 의견협의 및 입법예고를 거친 후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02.10.17에 국회에 제출되어 2002.11.7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

고, 지방세법시행령개정안은 2002.10.21부터 2002.11.20까지 관계부처 의견협의 및 입법예고를 거친 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02.12.30에 개정법률과 함께 공포되어 2003.1.1부터 시행되었다.

이하에서 2002년에 개정된 지방세법령의 주요내용과 그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I 주요 개정내용 및 이유

1. 지방세구제제도에 준수법적 절차 도입(법 제74조의2, 제78조 본문 단서 신설)

<개정이유>

- 지방세 불복에 따른 구제절차의 공정성·객관성 제고를 통한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현 행	개 정
<p>〈신 설〉</p> <p>○ 이 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목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서신설></p>	<p>○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에게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의 열람과 의견진술권을 부여</p> <p>○ 이 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목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법 제11조·제12조·제16조·제20조 및 제26조의 규정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하되, 이 경우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본다.</p>

-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절차에 준사법적 절차를 도입
 - 불복청구자에게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의 열람과 의견진술권 부여
 - 행정심판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청구인의 대표자선정, 청구인의 지위승계, 이해관계인의 참가, 청구의 변경, 구술심리 등 준사법적 절차와 관련된 일부 규정을 준용

<지방세 불복청구 절차에 새로 도입한 행정심판법 준용제도>

- ① 청구인의 대표자 선정(제11조) : 다수의 청구인이 공동으로 심판청구를 하는 때에는 청구인중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음.
- ② 청구인의 지위승계(제12조) : 청구인이 사망한 때, 청구인인 법인 등이 합병한 때 등에는 그 승계자가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함.
- ③ 심판참가(제16조) : 심판결과에 대하

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또는 행정청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사건에 참가할 수 있음.

- ④ 청구의 변경(제20조) : 청구인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안에서 청구의 취지 또는 이유를 변경할 수 있음.
- ⑤ 심리의 방식(제26조) : 행정심판의 심리는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함.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청구한 때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로 하여야 함.

2. 불복청구인의 서류열람권 부여에 따른 규정보완(영 제55조의2)

<개정이유>

- 지방세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준사법적 절차 도입을 위해 지방세법개정안에 관계서류의 열람 규정을 신설 (§74의2)하였으므로
- 신설된 법규정의 위임에 따라 관계서

현 행	개 정
<신 설>	<p>제55조의2(관계서류의 열람신청) ①법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하는 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서류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p> <p>③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열람하는 자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p>

류의 열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하는 자는 이를 구술로 당해 재결청에 요구할 수 있다.

※ 참고(국세기본법 §46)

제46조 (관계서류의 열람신청) ①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내용을 동조하고자

- ② 1항의 요구를 받은 재결청은 그 서류를 열람 또는 등초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상위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재결청은 필요하

현 행	개 정
<신 설>	<p>제55조의3(의견진술) ①법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자는 진술자의 주소 또는 거소 및 성명과 진술하고자 하는 내용의 대강을 기재한 문서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일시 및 장소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진술시간을 정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p>

지 방 세 해 설

현 행	개 정
	<p>1.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목적이 된 사항이 경미하거나 기일이 경과한 후 그 신청 또는 청구가 있는 경우</p> <p>2.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목적이 된 사항이 법령해석에 관한 것으로서 신청인 또는 청구인의 의견진술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p> <p>③제2항의 경우에 의견진술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이유를 명시한 문서로 그 뜻을 당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④법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은 간명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증거 그 밖에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p> <p>⑤제4항의 의견진술은 진술하고자 하는 의견을 기록한 문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p>

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열람 또는 등초하는 자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3. 불복청구인의 의견진술권 부여에 따른 규정보완(영 제55조의3)

<개정이유>

- 지방세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준사법적 절차 도입을 위해 지방세법개정안에 의견진술권을 신설(§74의2) 하였으므로
- 신설된 법규정의 위임에 따라 의견진술의 신청·통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참고(국세기본법 §47) 제47조 (의견진술) ①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자는 진술자의 주소 또는 거소 및 성명과 진술하고자 하는 내용의 대강을 기재한 문서로 당해 재결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재결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일시 및 장소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진술시간을 정하여 이의신청심사위원회·국세심사위원회·국세심판관회의 또는 국세심판관합동회의의 회의개최일(이의신청의 경우에는 결정을 하는 날) 3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1999.12.28>

- 1.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목적이 된 사항이 경미하거나 기일이 경과한 후 그 신청 또는

현 행	개 정
○ 20톤미만의 선박에 대하여 등록을 받을 때에는 선박가액의 1,000분의 0.2의 등록세 납부	○ 선박법 제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형선박의 등록을 받을 때에는 선박가액의 1,000분의 0.2의 등록세 납부

- 청구가 있을 때
2.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목적이 된 사항이 법령해석에 관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의견진술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
- ③ 제2항의 경우에 의견진술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결청은 이유를 명시한 문서로 그 뜻을 당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은 간명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증거 기타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
- ⑤ 제4항의 의견진술은 진술하고자 하는 의견을 기록한 문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4. 소형선박으로 등록되는 부선을 과세대상에 추가(법 제134조)

- <개정이유>
- 현재 1,000분의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일반 선박등기와 달리 1,000분의 0.2의 세율이 적용되는 소형선박등록의 과세대상은 20톤미만의 선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 선박법에서 20톤이상 100톤미만의 부선도 소형선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20톤이상 100톤미만의 부선을 소형선박의 등록세과세대상에 추가하여 과세 불형평 해소

<1999.4.14. 개정 선박법 및 선박등기법>

- 선박법에 의한 등록대상(제26조의2제1항)
 1. 총톤수 20톤미만의 기선
 2. 총톤수 5톤이상 20톤미만의 범선
 3. 총톤수 20톤이상 100톤미만의 부선.
- 선박등기법에 의한 등기대상 선박(제2조)
 - 총톤수 20톤이상의 기선과 범선 및 총톤수 100톤이상의 부선
 - ※ 2001.12월말 현재 20톤 이상 100톤 미만 부선 등록현황 : 202척

5. 레저세 과세대상에 전통 소싸움 추가(영 제105조의2)

- <개정이유>
- 2001년말 지방세법개정시 「소싸움경기투표권」에 대한 레저세 과세의 법적근거를 마련(시행령에 위임)하였고,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이 2002.8.26에 제정공포 되었으므로
 - 지방세법시행령에 「소싸움경기투표권」을 레저세 과세대상으로 규정

현 행	개 정
<p><신 설></p> <p>제105조의2 (생 략)</p>	<p>제105조의2(과세대상) 법 제15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법률에 의한 소싸움을 말한다.</p> <p>제105조의3 (현행과 같음)</p>

[지방세법]
제152조 (과세대상) 레저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륜·경정법에 의한 경륜 및 경정
2.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경마
3.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고 투표적중자에게 환급금 등을 교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법률]
[제정 2002.8.26 법률 제6722호]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소싸움경기투표권"이라 함은 소싸움 경기에서 소싸움 결과를 적중시켜 환

현 행	개 정
<p>제175조(납세지등) ① ~ ③ (생 략)</p> <p>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 17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하는 소득할중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할은 납세의무자의 근무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부과하고, 이자소득·배당소득등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할은 그 소득의 지급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부과한다.</p>	<p>제175조(납세지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 17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하는 소득할중 다음 각호의 소득세할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시·군에서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할 : 납세의무자의 근무지를 관할하는 시·군 2. 이자소득·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할 : 그 소득의 지급지를 관할하는 시·군. 다만, 연금소득중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세할은 그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주소지, 사업소득중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할은 그 소득을 지급 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으로 한다.

급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소싸움경기시행자가 발매하는 투표방법·싸움소번호 및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 표권을 말한다.

제7조 (소싸움경기투표권의 발매) ①경기시행자는 농촌지역개발 및 축산업발전 등에 필요한 재원조성을 위하여 소싸움경기투표권[이하 "우권(牛券)"이라 한다]을 발매할 수 있다.

② 우권의 단위투표금액 및 발매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소득세할 주민세 납세지 개선 (법 제175조제4항)

<개정이유>

- 현재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당해 소득세할의 납세지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 하더라도 당해 소득의 지급지를 관할하는 시·군이 납세지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금급여나 요양급여비용을 일괄 지급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주민세 납세지는 당해 공단소재지가 되는 모순이 발생되고 있어

- 연금소득과 사업소득을 일괄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도 당해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세지는 그 소득을 지급 받는 자의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이 되도록 개선

☞ 시행일 : 2003.7.1.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부터 시행(법 부칙 제4조)

7. 소득세할 주민세 과세자료 통보 시기 조정(법 제177조의4제3항)

<개정이유>

- 현재 세무서장이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 받거나 부과지한 때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 그 내역을 통보하고 있으나,
 - ※ 현행 규정의 개정당시인 1999년말 지방세법 개정시에는 전산체계 미비 등으로 인해 과세자료 통보기한을 그 다음달 말일로 규정
- 시·군에서 체납처분을 위한 독촉장 발부 등 업무처리기간(납기한 경과후 50일 이내)이 부족하므로
- 시·군에서 관련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세무서장의 주민세 과세자료 통보기한을 15일 단축

현 행	개 정
○ 세무서장이 소득세할 주민세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지를 하는 때에는 <u>그 다음달 말일까지</u>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	○ 세무서장이 소득세할 주민세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지를 하는 때에는 <u>그 다음달 15일까지</u>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

현 행	개 정
<제5항 및 제6항 신설>	<p>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세의 특별징수 의무자가 제17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한 시·군별 특별징수세액에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그 과부족분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시·군에 납입하여야 할 특별징수세액에서 가감조정하여야 한다.</p> <p>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감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납입하는 특별징수세액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환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환부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p>

8. 특별징수한 소득세할 주민세의 착오납입분 가산세 제외 (법 제 179조의3제5항 및 제6항 신설)

<개정이유>

- 건강보험공단의 경우 전국의 병의원·약국 등 약 6만여 사업자가 청구하는 요양급여비를 지급·관리함에 있어 각 사업자의 주소지 등 변동사항을 즉시 정리하여 주민세 소득세할을 납세지 시·군별로 정확하게 납입하기는 현실적으로 곤란하므로 착오납입에 따른 가산세 및 환부이자 처리문제가 야기됨
- ※ 현재 특별징수한 주민세를 공단이 직접 납입하고 있으나, 요양기관의 주소 등 변경사항에 관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별도법인)에서 각 사업자로부터 신고 받아 정리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공단이 착

오로 다른 시군에 주민세를 잘못 납입한 경우 수정납입할 수 있도록 하고, 가산세 및 환부이자를 배제토록 함(보건복지부 요구사항 수용)

9. 특별징수분 소득세할 주민세의 수정납입방법 등 규정(영 제130조의10)

<개정이유>

- 법 제179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이 특별징수한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세지를 착오한 경우 잘못 납입한 특별징수세액의 가감조정 납입방법 등 세부사항 규정 필요
- 매월 특별징수한 주민세를 각 시·군에 정기적으로 납입시 구체적인 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현 행	개 정
<p>제130조의10(특별징수 세액의 납입) ①(생략)</p> <p>②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특별징수세액은 법 제17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납입서에 계산서와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군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소득과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그 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신 설></p>	<p>제130조의10(특별징수 세액의 납입)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근로소득·이자소득 및 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과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사업소득----- -----.</p> <p>③ 주민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법 제179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군별 특별징수세액에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그 과부족분을 오류를 발견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당해 시·군에 납입하여야 할 특별징수세액에서 가감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납는 부분이 당해 시·군에 납입하여야 할 다음달의 특별징수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후의 달의 특별징수세액에서 조정할 수 있다.</p>

- 과부족분을 가감조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다음달 10일까지 가감조정하도록 하되, 과부족분이 그 다음달에 납입할 특별징수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의 특별징수세액에서 가감조정 할 수 있도록 함

10. 특별징수분 소득할 주민세 과세자료 통수보 근거마련(법 제 179조의4)

<개정이유>

- 현재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세 과세자료에 대하여 세무

서장이 이를 시·군에 통보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이 있으나,

- 소득세할 주민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세(원천징수분)의 경우 과세자료를 통보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미비되어 이를 보완

※ 현재 원천징수분 소득세에 대한 과세자료도 실제로는 시·군에 통보되고 있음

현 행	개 정
<p>○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 또는 이전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등록관청에 자동차세영수증등 자동차세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내보여야 한다. <단서 신설></p>	<p>○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 또는 이전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등록관청에 자동차세영수증등 자동차세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내보여야 한다. <u>다만, 당해 등록관청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자동차세의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서로 발급받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14. 농업소득세 관련 농업소득조사위원회 설치근거 규정 개정 (법 제213조제1항 및 제4항)

<개정이유>

- '9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읍면동 기능전환』 과 관련하여 읍·면·동장 관장업무중 시·군 이관이 불가피한 사

무에 해당되므로

-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시·군에 설치하도록 개정

15. 담배소비세의 시·군별 안분 규정 보완(영 제181조제3항)

<개정이유>

- 담배소비세는 반출한 후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시·군별 안분계산은 전월중 판매비율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설 제조업자의 경우는 전월 판매비율이 없으므로
- 현행 신설 외국산담배 수입업자의 경우와 같이 직전연도(1월부터 12월까지

현 행	개 정
<p>○ 수입금액·농업소득금액 그 밖에 농업소득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시·읍·면에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둔다. ○ 농업소득조사위원회는 당해 시·읍·면안의 납세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직무상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p>	<p>○ 수입금액·농업소득금액 그 밖에 농업소득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시·군에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둔다. ○ 농업소득조사위원회는 당해 시·군안의 납세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직무상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p>

현 행	개 정
제181조(신고납부 및 안분기준 등) ③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이 없어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한 외국산담배에 대한 시·군별 담배소비세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제180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별, 품종별 수량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수입판매업자의 경우에는 직전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각 시·군별로 징수된 담배소비세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제181조(신고납부 및 안분기준 등) ③제1항제1호 및 제3호 또는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이 없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한 담배 ----- ----- ----- ----- -----.

지) 각 시·군별로 징수된 담배소비세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도록 보완

- ※ 현재까지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2001년 4월 담배사업법의 개정으로 국내에서 담배제조업을 신규로 영위 가능
 - 2002년말부터 필립모리스코리아(주) 등 국내제조 시행

16. 폐염전 및 군용화학류시험장

용토지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기간 연장(영 제194조의15)

<개정이유>

- 정부의 염산업구조조정 정책에 따라 발생한 염전중에서 용수부족·고염분·지리적여건 등으로 농지등 다른 용도로 전환하지 못하고 계속 폐염전 상태로 있는 폐염전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누진과세할 경우 담세능력 등의

현 행	개 정
제194조의15(분리과세 대상토지) ④ (본문 생략) 1.·2. (생략) 3. 과세기준일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토지 또는 염전을 폐지한 날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단서신설> 4.~21. (생략) 22.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군용화학류시험장용토지. 다만, 허가받은 용도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4조의15(분리과세 대상토지) ④ (본문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 -----10년----- 다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21. (현행과 같음) 22. ----- 군용화학류시험장용토지(허가받은 용도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와 그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

현 행	개 정
○ “종업원” 이라 함은 <u>사업소 또는 사무소에 근무하는</u>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종업원” 이라 함은 <u>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u>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문제가 있으므로 분리과세기간 연장
- 다만, 분리과세 기간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되 타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용도에 따라 과세
 -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군용화약류시험장용토지는 허가가 취소되더라도 불발탄 및 각종 화약류의 처리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1년간은 분리과세하도록 함

17. 사업소세 종업원 개념의 재정리(법 제243조제6호)

- <개정이유>
- 현재 종업원의 범위에 관한 지방세법 체계가 지방세법에서는 사무소에 “근무하는” 임원·직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 그 하위법령인 지방세법시행령에서는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으로 보도

- 록 규정하고 있어 모순이 발생되므로
- 지방세법에 규정된 종업원의 개념을 재정리하여 문제점 해소

18.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납부기간 연장(법 제250조제3항)

- <개정이유>
- 현행 재산할 사업소세 납기는 7. 1부터 7. 10까지 10일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 신고납부기간이 10일간으로 짧아 여러 시·군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별로 세액을 안분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사항으로 건의가 있어
 - 재산할 사업소세의 신고납부에 따른 납세편의를 위해 신고납부기간을 1개월로 연장
 - ※ 2001.9.21. 경제장관간담회에서 방침결정

19. 법인·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시한 연장 등(법 제274

현 행	개 정
○ 재산할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를 납기로 신고납부	○ 재산할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신고납부

현 행	개 정
<p>○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나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2002.12.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p> <p>○ 산업단지 등의 안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항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50% 경감</p> <p>① 산업단지 등에 입주하는 자가 공장용 건축물 등을 신·증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p> <p>②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등이 산업단지 등을 조성한 후 공장용 건축물 등을 신·증축하는 부동산</p> <p>③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 등이 산업단지 등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p>	<p>○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나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2005.12.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p> <p>○ 현행 규정을 유지하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안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면제</p>

조 내지 제276조)

<개정이유>

- 수도권의 무분별한 팽창을 억제하고,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법인 및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필요성이 계속 인정되므로 취득세·등록세 감면시한을 3년간 연장
-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산업단지(국가 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중 지방소재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지방중소기업에 대해 집중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 지방(수도권외의 지역)소재 산업단지안에서 공장 및 연구시설 등을 신

축하거나 증축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50%경감”에서 “전액면제”로 세제지원 확대

※ 2002.5.3 지역균형발전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협의된 사항임.

20. 주행세 시·군별 안분기준에 관한 특례규정 보완(2001.12.31. 대통령령 제17447호 개정 부칙 제6조)

<개정이유>

- 2002년의 경우 주행세율 12%(2002.6.29 11.5%에서 상향조정)의 징수액

현 행	개 정
<p><부칙(2001.12.31 대통령령 제17447호)> 제6조(주행세액의 매월 시·군별 안분액에 관한 적용특례) 제146조의15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도분 주행세액의 매월 시·군별 안분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적용한다.</p> <p>1. 2.(생 략)</p>	<p><부칙(2001.12.31 대통령령 제17447호)> 제6조(주행세액의 매월 시·군별 안분액에 관한 적용특례) 제146조의16제2항----- 2002년도분 및 2003년도분----- ----- ----- 1. 2. (현행과 같음)</p>

(11,890억원)중 8,242억원은 지방세 보전액으로 시·군에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3,648억원은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배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 2002.7.1부터 2006.6.30까지 2001.6월 대비 유류세 인상분 누계액의 50%를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지급
 ○ 2003. 6월말까지는 유류세 인상 등 주행세율 인상요인이 없으므로 주행세중 시·군별 배분액(8,242억원)을 현행대로 유지하기 위함

Ⅲ. 맺음말

2002년도의 경우 지방세 제도개선을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부처 등에서 제기한 건의 사항과 민원이 다수 제기되는 사항 등 모든 과제를 모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참여하는 중앙과 지방간의 합동 토론회를 개최하여 심도있는 토의과정을 거친 다음, 그 토론회에서 선정된 2002년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법령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 심의절차 등의 과정을 거쳐 입법을 추진하였다.

그 중 국회에 제출된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제3회 아시아·유럽정상회담개최 건축물에 대한 등록세 면제규정을 삭제하는 부분과 관광단지안의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부분을 개정안에서 삭제)되는 등 심층검토를 거쳐 2002.11.7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2002.12.30.에 법률 제 6838호로 공포되었다.

지방세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용해야할 기준법의 성격이고 실제로는 그 기준법의 범위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조례로써 지방세를 운영하는 것이므로 지방세의 운영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인 것이다. 지방자치의 성숙한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지방세 제도개선은 개선과제의 선정단계부터 입법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지방자치단체가 주인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